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산검사위원회

목 차

○ 결산검사의견서	1
○ 결산검사 경과	3
○ 개선 및 권고사항	4
1. 예비비 지출의 절차 준수 권고	5
2. 명시이월·사고이월 과다 발생	6
3. 예산의 전용 및 변경	8
4. 예산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10
5. 공단 재무제표 작성 시 충분한 정보 제공	11
6. 재무제표의 주석표시	13
7. 환급액으로 인한 재정력 손실	14
8. 미수납액(체납액) 등 적극적 관리 촉구	16
○ 건의사항	17
○ 수범사례	25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결산검사 의견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2018년 4월 25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동작구 의회로부터 동작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8년 3월 27일부터 2018년 4월 25일까지(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7회계연도 동작구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동작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동작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김성근

검사위원 고성삼

검사위원 진광희

검사위원 최성민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18. 3. 27. — 2018. 4. 25. (3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대표위원	김성근	결산검사 총괄, 세입·세출결산 및 부속서류 검토
검사위원	고성삼	재무제표 검토 총괄, 세입·세출결산내역 검토
검사위원	진광희	세입·세출결산 및 부속서류 등 검토
검사위원	최성민	세입·세출결산 및 부속서류 등 검토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 자 별	결 산 검 사 내 용
본 청 (공단 포함)	3.27 ~4.6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검토,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의 회	4. 4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검토,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보 건 소	4.9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검토,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기 타 현 장	4.10~4.11	보건소 사당분소, 동작자원봉사은행,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정상황, 건전성 검토
의견서 작성 및 검 토	4.12~4.25	검사사항 정리 및 의견서 작성, 수검기관 의견 수렴, 최종 의견서 및 답변서 등 검토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개 선 및 권 고 사 항

1. 예비비 지출의 절차 준수 권고 (해당부서)

1) 현 황

동작구의 2017년 예비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부 서 명	지 출 액	예비비 지출사유
생 활 체 육 과	30,000,000	평창동계올림픽 단체입장권 사전구매 예산 부족분 사용
도 시 개 발 과	2,419,655,000	흑석6구역 소송결과에 의한 조합납부 토지매입대금 반환
도 로 관 리 과	41,826,230	도시계획시설(도로) 소송 결과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
도시전략사업과	119,436,690	소송 화해권고 수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지급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설정하고 예측이 곤란한 예산외의 지출이나 세출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예비비의 성격상 예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하면 우선, 사용 요구를 원하는 부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사유를 명기하여 예산부서에 심사를 요청하고 예산부서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사업부서가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행정관례상 예산부서에 사용요구를 할 때,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 따라 예비비를 집행한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고액 소송 결과 등의 예비비 지출은 거액일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부서에서는 예비비 사용 요구 시 가능한 한 예산 삭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을 건의합니다.

2. 명시이월 · 사고이월 과다 발생 (해당부서)

1) 현 황

동작구의 2017년 주요 이월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 서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일자리경제담당관	13,148,957,650	10,832,865,660	1,514,825,300	282,028,000
사 회 적 마 을 과	4,310,120,000	2,716,090,966	414,500,000	1,018,513,140
복 지 정 책 과	9,352,710,000	8,971,668,938	110,000,000	
어 르 신 청 소 년 과	78,535,538,420	74,493,224,635	212,854,000	2,891,052,220
보 육 여 성 과	108,250,704,660	91,216,289,761	7,460,603,650	2,811,874,770
청 소 행 정 과	30,370,655,000	27,592,129,880	693,000,000	579,408,990
도 시 계 획 과	1,286,736,420	746,997,540		384,204,000
도 시 개 발 과	2,994,560,000	2,785,635,500		123,500,100
건 축 과	296,964,000	199,967,500		82,000,000
공 원 녹 지 과	11,691,763,990	7,219,777,584	1,000,000,000	2,289,450,720
건 설 관 리 과	1,047,121,000	315,444,440	628,530,000	74,168,880
안 전 치 수 과	7,393,793,000	6,125,139,480	258,592,000	814,500,000
도 시 전 략 사 업 과	20,127,890,400	14,704,295,750	3,097,558,000	2,265,840,220
건 강 관 리 과	13,220,939,000	11,444,037,698		38,157,480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세입·세출 예산에 명기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기중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 의하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예외사항으로 동법 제50조에서 세출예산의 다음연도 이월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기 사업비용은 당기 세입에서 충당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심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예산 집행에 있어 이월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의 과다한 이월사업비 책정은 건전 재정 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여 이월하지는 않는지 사전에 세밀하게 살피고, 예산편성 후 이월시키게 되면 다른 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한 사안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매칭 사업의 경우에는 교부 기관에 적시에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3. 예산의 전용 및 변경 (기획예산과 및 해당부서)

1) 현 황

동작구의 2017년 주요 전용 및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부 서	전 용		변 경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사 회 적 마 을 과	1건	6,700,000	-	-
생 활 체 육 과	-	-	2건	22,370,000
교 육 문 화 과	3건	14,500,000	2건	86,182,000
부 동 산 정 보 과	-	-	3건	14,225,000
복 지 정 책 과	3건	12,700,000	-	-
사 회 복 지 과	-	-	6건	57,207,000
어 르 신 청 소 년 과	1건	1,500,000	10건	520,043,000
청 소 행 정 과	-	-	4건	382,381,000
도 시 전 략 사 업 과	-	-	2건	25,200,000
건 강 관 리 과	17건	666,413,000	9건	103,900,000
보 건 의 약 과	2건	16,500,000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하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세부사업) 간 편성목의 금액을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고 변경은 세부사업 간 같은 편성목에서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절차를 보면 전용은 자치단체장이 변경은 실·국장이 책임 하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전용 절차를 전용 요구(내부방침)는 ‘국장’으로, 결정권자를 ‘부구청장’으로 정하고 이 절차를 준수하여 전용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운영으로 인한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용과 변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하는 등 이 제도 활용은 가급적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및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급적 예산의 성립 이후에 증·감할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 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결정권자를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할 것을 건의 하는 바입니다.

4. 예산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기획예산과)

1) 현황 및 문제점

추진 사업에 대한 2017년 목표 대비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내용(단위)	실적 및 목표치				해당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국외연수 지원 인원(명)	목 표	45	50	65	행정지원과
	실 적	30	85	91	
주민자치역량 강화교육 실시횟수(횟수)	목 표	7	5	7	지치행정과
	실 적	12	13	17	
자원봉사교육 이수자(명)	목 표	800	921	921	자치행정과
	실 적	877	1,000	5,259	

상기 표를 분석하면 2017년도 목표치를 설정할 때, 2016년 실적을 참고하여야 하나 이를 감안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당위성에 의문을 가지도록 합니다.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목표치에 대한 실적은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사업계획 수립 시에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업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5. 공단 재무제표 작성 시 충분한 정보 제공 건의 (기획예산과-시설관리공단)

1) 현황 및 문제점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경상전출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집행예산	반납액	시비
경상전출금	15,653,347,587	901,346,413	124,636,000

그리고, 2017년도 요약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익계산서

제18기 : 2017년01월01일 ~ 12월 31일

과목	금액
1. 영업수익 (대행사업수익)	15,653,347,587
2. 매출원가	13,216,939,955
3. 매출총이익	2,436,407,632
4. 판매비와일반관리비	2,436,407,632
5. 영업이익	-

시비 124백만 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손익계산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예수금 회계 처리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1-3-2 가. 수익인식과 회계처리’에는 ‘대행사업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단에 업무를 위, 수탁 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 교부액이라고 정의하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행업무 수행으로 인한 위탁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반해 공단의 대행사업 회계처리는 대행사업비 수취 시에는 수익으로, 집행 시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공단의 영업성과 등의 회계정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지방공기업 내, 외부 정보이용자들이 요구하는 회계정보 제공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이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비를 별도 예수금 계정으로 분류한다면 예수금에 대한 거래처원장을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충분한 정보가 전달 될 수 있게 하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6. 재무제표 주석표시 (재무과)

1) 현 황

2017년 동작구청의 장기투자증권 출자금 발행 피투자기관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지분율	피투자기관 경영성과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출자금	공단	도시시설 관리공단	100%	15,653,347,587	15,653,347,587	0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의 당기 손이익은 정산반환금을 고려하면 항상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익의 차이를 정산반환금으로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부 내역을 밝히는 것은 성과 공시 명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다음과 같이 대행사업수입의 정산반환금 901백만 원과 영업외수익의 정산반환금 431백만 원도 함께 표기하여 충분한 정보가 전달 될 수 있기를 건의합니다.

(단위: 원)

구 분			지분율	피투자기관 경영성과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출자금	공단	도시시설 관리공단	100%	16,986,449,697 (1,333,102,110)	15,653,347,587	0

7. 환급액으로 인한 재정력 손실 (징수과)

1) 현황 및 문제점

동작구의 최근 5년간 세입금 환급액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연도	세입금 환급액			
	행정기관 착오 (가)	기 타 (나)	납세자 권리구제 (다)	환 급 액 (라 =가+나+다)
2017	44,691,740	166,370,000	29,082,940	240,144,680
2016	61,274,780	320,499,990	1,031,957,330	1,413,732,100
2015	50,898,650	155,072,350	7,686,460	213,657,460
2014	373,235,600	147,660,990	1,376,470	522,273,060
2013	67,210,020	93,663,630	188,550,750	349,424,400

환급액은 환급이자의 크기를 결정하므로 동작구청의 재정력 손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행정기관 착오’, ‘기타’, ‘납세자 권리구제’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로 인한 환급액은 사전 예측이 어렵고 사건별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인한 환급액은 납세자의 이종납부, 법령개정, 납부서 미송달 등으로 발생한 환급액 등입니다. 따라서, ‘납세자 권리구제’ 및 ‘기타’로 인한 환급액은 행정기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하여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액은 행정기관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상기 표에 의하면, 과거에 비하여 2017년도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적인 크기는 45백만으로 적은 편은 아닙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환급액이 커지면 이에 따른 환급이자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급액이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액 중 통제 가능한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액은 지방세수입 부과 착오, 사용료수입 등의 세외수입 부과 착오,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부과 착오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 부분은 전문직이 대부분인 세무부서(징수과, 부과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경우 각 과에서 별도 관리하는데다가 업무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담당자의 정기적 전문 교육 강화 및 업무 보직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과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과태료 부과 시스템 등을 정밀하게 보강하여 이의신청 자체를 원천 차단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8. 미수납액(체납액) 등 적극적 관리 촉구 (해당부서)

1) 현 황

동작구의 2017년 미수납액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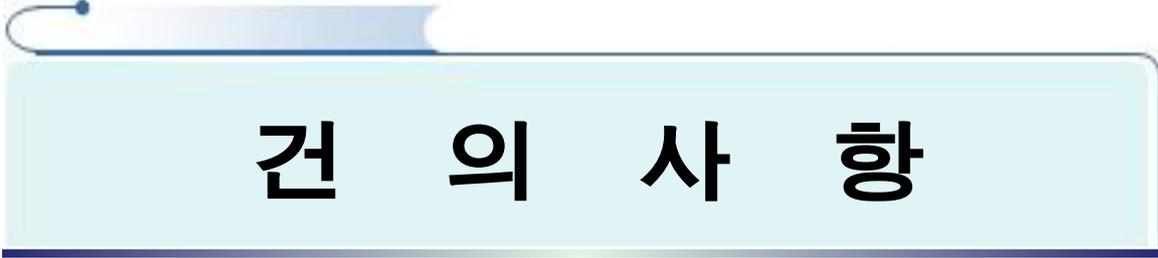
(단위: 원)

부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행 정 지 원 과	4,515,332,000	4,568,263,460	4,556,609,270	11,654,190
맑 은 환 경 과	1,475,204,000	2,650,818,290	1,485,557,170	1,165,261,120
주 택 과 (이 행 강 제 금)	1,573,014,000	3,287,536,570	2,519,021,740	768,514,830
건 축 과	602,700,000	1,452,870,570	619,373,470	833,497,100
건 설 관 리 과	2,610,280,000	3,822,077,440	2,836,395,060	985,682,380
교 통 행 정 과 (일반 , 특별회계)	2,578,978,000	11,468,510,340	2,829,507,160	8,639,003,180
보 건 기 획 과 (과 태 료)	40,000,000	44,047,000	31,363,800	12,683,200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 세입금에 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징수 결정된 사항에 대한 보다 세심한 사후관리 및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 노력으로 수납율을 높이고, 동작구의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의 사항

1. 일자리경제담당관

○ 창업지원센터 운영 철저

예비 창업자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 공간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 1층은 당초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초의 용도와 달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 1층을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본래의 용도대로 운영하여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2. 행정지원과

○ 임대청사 임대료 예산 지출에 대한 재검토

현재 동작구는 구청사의 공간부족으로 유한양행 3층, 9층, 10층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쓰고 있는 실정으로 총 7개의 부서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38억, 관리비 2억 3천만원이라는 적지않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신청사 이전 전까지 임차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3. 자치행정과

○ 자원봉사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 모색

동작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한때 서울시에서 자원봉사 분야 최우수구에 선정되는 등 활동실적이 우수하였으나, 현재는 예전만큼의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면에서도 자원봉사센터의 회원 관리 및 실질적인 활동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4.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 구민체육센터 스크린골프장 공단 직영 건의

현재 시설투자업체와 6:4 수익배분을 하고 있으나 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구민의 여가 생활증진과 경영효율을 위해 구예산을 지원받아 직영할 것 권고합니다.

5. 교육문화과

○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철저

2017회계연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대상으로는 동작구 관내 총 77개 학교로, 유치원 32, 초등학교 20, 중학교 16, 고등학교 7, 학력인정기관 1, 누리학교 1개소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한 후 집행결과를 지도점검하고, 이를 평가하여 향후 지원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차등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문화행사의 적극적 지원

동작구는 충효의 고장으로서 사육신추모제, 장승배기 장승제, 충효축제 등 전통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상징성이 있는 문화행사인 만큼 더욱 잘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6. 징수과

○ 결손처분 관리 철저

2017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의 결손처분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결손처분 하였더라도 시효소멸이 아닌 경우에는 추후 재산 발생 시 채권 확보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

(단위 : 원)

세입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지방세 수입	77,788,924,640	76,818,883,240	245,184,490	724,856,910
세외수입	78,270,644,391	51,011,097,411	879,827,800	26,379,719,180

7. 사회복지과

○ 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동작구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여러가지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독립 공간이 없는 형편으로 더욱 다양한 자활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독립공간 마련 등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복지급여 환수 및 과태료 징수 철저

2017회계연도 사회복지과의 과태료, 그 외수입, 지난연도 수입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그 중 복지급여 미환수금이 149,628,310원으로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복지급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급여지급 및 환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액 17,998,000원에 대해서도 환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회계연도 과태료, 그 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내역

(단위 : 원)

세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 납 액 (나)	미수납액 (다=가-나)
총 계	75,000,000	332,657,500	165,031,190	167,626,310
과 태 료	52,000,000	115,986,100	97,988,100	17,998,000
그 외 수 입	17,000,000	99,111,280	41,171,660	57,939,620
지난년도수입	6,000,000	117,560,120	25,871,430	91,688,690

8. 보육여성과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방안 검토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인원을 어린이집에서 활용하고, 그 후 보육교사로 채용하는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생과의 취업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소행정과

○ 폐기물 처리위탁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

폐기물 처리 위탁 방식이 2015년 독립채산제에서 2016년도 지역도급제로 전환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의 낭비요인 분석 및 세수 증대방안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수집 운반 위탁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현재 동작구 관내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총 16개소로 컨테이너 1개소, 조립식 건물 4개소, 공공건물 4개소 및 임차건물 7개소가 있습니다. 임차 휴게소 7개소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735,000천원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휴게소 임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권유합니다.

※ 환경미화원 휴게실 현황(2017.12.31. 기준)

총계	컨테이너	조립식건물	공공건물	임차건물
16개소	1	4	4	7

○ RFID 세대별 종량제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속적 증가는 그 처리비용에 있어 우리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 시행 수수료 균등 부과는 감량 동기를 유발하기 미흡하며, 특히 1~2인 소형세대에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RFID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현재 RFID 방식은 동작구 관내 아파트 84개 단지 37,337세대 633대를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아파트 및 빌라 밀집지역에 RFID방식이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관리 철저

동작구 관내 공중화장실의 16개소 및 기타23,964개소의 정화조에서 방출되는 분뇨 및 오니의 적정 처리는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의 기본입니다. 정화조 오니 및 분뇨 처리 수수료 예산이 2017년도 기준 897,172천원으로 적지않은 비용을 차지하는 만큼 정화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수수료 비용이 점차 감소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맑은환경과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철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2012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가 면제될 뿐 아니라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제도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과 대상 차량에 대하여 철저한 징수를 통해 세입 재원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단위 : 원)

구 분	부 과		징 수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자 동 차	33,743	2,898,000,000	33,586	2,791,000,000	96.3

11. 교통행정과

○ 그린파크사업 활성화 노력 요구

과거에는 보안을 우려한 건물주가 많아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CCTV 설치와 담장경계의 개폐식 문을 설치하는 등 보안문제와 사생활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있어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니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건기획과

○ 금연 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징수 철저

금연 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의 징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동시에 동작구 세입의 재원이 되는 사업인 만큼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연 건강증진위반 과태료 징수현황(2017.12.31. 기준)

(단위 : 원)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44,047,000	31,363,800	12,683,200

13. 건강관리과

○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철저

舊사당1동 청사에 위치한 치매지원센터는 만60세 이상 어르신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까지 포괄하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의 2017년도 운영예산은 588,912천원으로 서울시 보라매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2018회계연도에는 1,640,000천원의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동작구 지역 치매예방 및 관리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구차원에서 지원 건의

대상포진 예방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비교적 고가의 접종비용으로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작구 차원에서 동작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원가 예방접종 등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4. 보건약과

○ 마약법, 약사법,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철저로 세수증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의료법 위반사항은 동작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힘써 주시고,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한 세수 증대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등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현황(2017.12.31. 기준)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과 징 금	10,000,000원	48,862,500원	48,862,500원	0
과 태 료	3,000,000원	8,000,000원	8,000,000원	0



수 범 사 례

아무거나 프로젝트

(교육문화과)

1. 대 상 : 관내 초·중·고생 또는 관내거주 19세 미만의 5명 이상 모임
2. 주요내용 : 어린이, 청소년 스스로 모임 구성, 사업 구상, 계획, 집행, 평가를 주도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사업비 지원
3. 지원내용 : 사업당 300,000원 ~ 2,500,000원 활동비 차등 지원
4. 운 영
 - 네이버 웹카페 개설 및 운영, 아무거나 블로그 기자단 운영 등
 - 입체적인 프로젝트 관리로 프로그램의 내실 증진
5. 주요성과
 - 청소년 동기부여 촉진 : ‘드림업 아카데미’ 운영
 - 과도한 경쟁에서 탈피하여 상호성장을 돕는 심사방식으로 전환
 - 청소년 이끔이 역량 강화
6. 기 타
 - : 8개의 타구(광진, 강동, 도봉, 영등포, 노원, 마포, 성동, 양천)에서 벤치마킹

2017.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실적 평가 우수 (기획예산과)

1. 분 야 : 2017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실적 평가
2. 평가기관 : 서울특별시
3. 평가결과 : 우수구 수상 (인센티브 : 20,000천원)
4. 평가기준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집행을 기준
- ' 17. 12. 31 기준 대상액 338.3조 원 중 300.9조 원, 89.22% 집행
(목표대비 0.02% 상승)

※ 수상현황

구분	최우수(1)	우수(4)
자치구	송파구	중랑, 강북, 은평, 동작
인센티브	3,800만 원	각 2,000만 원

2017. 시·구 공동협력사업 세무분야 1위 (징 수 과)

1. 사업분야 : 2017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세무분야
2. 평가기관 : 서울특별시(세무과, 38세금징수과)
3. 평가결과 : 3개사업 전부 최상위권 “수상구”
 - 시세징수 종합평가분야 : 수상구
 - 체납시세 징수평가분야 : 수상구
 - 법인 세원발굴평가분야 : 수상구
4. 수상내역 : 재원조정비 3억 1백만 원 및 기관표창 (서울시 전체 1위)

기부, 나눔 실천으로 행복한 동작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복지정책과)

1. 사업개요

- 1) 목 적 : 민·관 협력으로 지역 내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 2) 추진방법 : 동작복지재단 및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추진
- 3) 주요내용 : 일일찻집 운영, 김장 및 연탄나눔 행사, 쌀·라면 전달식, 바자회, 사랑의 저금통 사업 등

2. 모금액 : 1,203백만 원(현금 644백만 원, 현물 559백만 원)

※ 모금 목표액 1,075백만 원 대비 11.9% 증가

3. 지원현황

- 1) 지원대상 : 법정보호세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틈새계층
- 2) 연도별 현황

연도	계	모금(천원)		지원(세대/천원)	
		성금	성품	지원가구	지원액
2015	1,040,236	658,346	381,890	18,476	1,040,236
2016	1,075,323	651,691	423,632	20,738	1,075,323
2017	1,185,866	638,102	547,764	26,476	1,175.613

3) 지원내역 : 생계비, 난방비, 교육비, 의료비, 쌀, 라면, 김치 등 전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보육여성과)

1. 사업개요

- 1) 기 간 : 2017. 5월 ~ 12월
- 2) 추진방법 :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100% 추진
- 3) 지원대상 : 2개 모임 (꼬마도토리, 아껴서 남주자)

2. 추진내용

(단위 : 천원)

모임명	지원금액	사업내용
꼬마도토리	9,500	1) 육아품앗이 : 육아교실을 통해 놀이강좌 배우기 2) 인형극놀이 : 다양한 형태의 인형극 놀이 3) 아빠랑 마실 : 아빠와 함께 바깥놀이를 통한 경험 4) 마을축제 : 공동육아 관련 체험부스 운영 등
아껴서 남주자	3,200	1) 오감발달 퍼포먼스 : 미술, 요리 등 다양한 경험 2) 체험학습 : 자연에서 숲놀이 3) 골목장터 : 아이들 장터 참여로 경제개념 갖게 하기

3.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12,700	12,700	0	시비 100%

4. 기대효과

- 1) 공동육아를 통한 육아 부담 해소
- 2)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